



司書職 充員上의 問題點

— 公務員을 中心으로 —

申 學 均

〈國立中央圖書館 指導協力課長〉

1. 序 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서직 특히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서직들의 이동 실패는 너무도 빈번하다. 외국의 경우 한 평생을 바쳐서 도서관에 봉직하고 정년 퇴직이 될때까지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이 상례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도서관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서 도서관에 봉사한 분들이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도 35년간 근속을 하고 있는 李宜瑛 氏와 같은 분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이러한 장기 근속자가 드물고 이동이 자존에 이에는 몇가지 문제들이 있어 充員上 적지않은 애로가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남아 돌아가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때 이전만 사서직원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그 업무를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자격과 지식 능력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2. 司書의 資格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서 직원 또는 사서 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보면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직원의 자격은 正司書와 準司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 제2항을 보면 “正司書가 될수 있는 者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 ① 대학의 도서관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②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③ 준사서로서 사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로 되어 있고 제3항을 보면 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초급 대학 졸업자(실업 고등 전문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學點을 15學點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②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라고 규정하고, 강습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미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上記 各項에 해당되는 자로서 문교부 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 고시에 합격해야 사서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격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물론 자격의 부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격의 부여가 그대로 지식과 능력의 심도까지를 측정할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은 도서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정실적인 자세 즉 투철한 봉사정신이 또한 요구 되고 있다.

미국 도서관협회가 내놓은 33개 항목에 달하는 전문직 사서의 자질을 보면

- ① 정확성, ② 사실에 대한 기억력, ③ 인내성, ④ 책임감, ⑤ 작업 조직의 능력, ⑥ 지도력, ⑦ 실행력, ⑧ 판단력, ⑨ 외모의 단정, ⑩ 건강, ⑪ 태도, ⑫ 자신력, ⑬ 공평성, ⑭ 명량성, ⑮ 성실성, ⑯ 창의성, ⑰ 적응성, ⑱ 활발성, ⑲ 비판적 태도, ⑳ 용기, ㉑

협조성, ㉒ 성실성, ㉓ 도서관에 대한 관심, ㉔ 공공 도서관과의 관계, ㉕ 독서의 습관, ㉖ 도서관에 대한 지식의 적응성, ㉗ 지역 사회에 대한 지식, ㉘ 적극성, ㉙ 인사에 대한 공평성, ㉚ 부하에 대한 공평성, ㉛ 지식력, ㉜ 훈련에 관한 능력, ㉝ 감동력 등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자기 專攻을 가진 대학 졸업자를 입학자적으로 하는 도서관 학교에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이러한 자질까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320時間이라는 단기 강습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비록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充員上의 問題點

충원상의 문제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으니 대우 문제 지방공무원임용령 문제, 임용상의 문제 등을 들수있다.

1) 待遇問題

국가 재정이 어렵고 또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유독 사서직에게만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의 정신으로 보거나 현실적 여건이 대우를 개선해 주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 기록, 시청각 자료, 국가 및 지방 행정 자료, 향토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공하여 그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레크리에이션, 기타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공공도서관의 기능) 제4항을 보면 “도서관 업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제4항에는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의 정신을 살린다면 현재의 행정직군 속에 들어 있는 사서직을 별정직화하여 교육 공무원으로 합과 동시에 도서관법 제15조 제4항이나 제17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기능이 부여돼 있으므로 연구 수당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서관장과 사서를 중등학교 교장과 중등학교 교사로 각각 대우를 한 일제시 처우도 사회교육에 종사하는 도서관 사서들을 우대해 주자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봉사 정신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직무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理由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전문성

㉞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다양성, 도서, 지도, 악보, 고문서, 테코오드,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등 그 자료의 범위가 각양 각색인데다가 쓰여진 言語도 국어 외에 中國語·日語·英語·佛語·獨語·伊太利語·스페인어 등 多樣하기 때문에 語學은 말할것도 없고 박학 다식하지 못하고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분 류

6만 내지 6만 5천의 항목으로 학문을 세분해 놓았기 때문에 분류표의 기본 계열과 조직을 알지 못하고는 분류 정리할 수 없는 극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③ 참고 업무

이용대상자로부터 문의되어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수 많은 자료들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이 없이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④ 독서 지도

독서를 통하여 성격까지 개조시키는 오늘 날의 독서 지도는 독서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연구없이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⑤ 서지 작성

신문이나 학술 잡지의 기사 색인을 작성하고各種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서지 작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는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⑥ 시청각 기재의 조작

시청각 자료의 이용자를 위하여는 그 조작법을 알지 못하고는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⑦ 위생 문제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자료에는 많은 손때가 묻어 붙결할 뿐만 아니라 책에는 또한 문지가 묻어 있어 건강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서고 내부가 현대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건강을 해치기 쉽다.

⑧ 육체적 노동의 수반

서고가 기계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수백권씩 들어가고 나오는 책의 운반을 위하여는 육체적 노동이 뒤따르게 된다.

⑨ 자격증 소지

행정적 속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직종이다.

⑩ 계속적인 연구

과학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학문의 연구개발은 도서관을 운영 관리하는 사서직에게는 부단한 연구를 수반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 제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묵묵히 일하는 사서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급 직종별로 볼 때 수당을 타지 않는 직종이 오히려 적을 정도로 대부분 받고 있는데 사서직에게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담당하는 업무의 질과 양으로 보아도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문제 때문에 유능한 사서직 공무원을 확보할 길이 없는데에 국공립 도서관의 운영상 애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상의 우대를 해주는 사립 기관의 도서관으로 유능한 사서들이 진출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별정직의 형태로든 수당 지급의 형태로든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국공립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첩경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地方公務員任用令 問題

현행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는 사서라고 하는 직종이 없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건립한 공공 도서관에는 전문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특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일반 행정직으로 보하면 일도 잘 되지 않으려니와 담당자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문적으로는 유능한 사서를 쓰고자 해도 법적으로 직종이 없으니 쓸수가 없고 도서관을 운영하자니 제대로 되지 않아 시군립 도서관 운영상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사서 직종을 삽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소속청을 일원화하는 길 밖에는 없다.

《26페이지에서 계속》

도 이것은 東洋學을 專攻하는 이가 共通的으로 느끼고 있는 問題點이 될 것이다.

國會圖書館은 그 間 韓國學 研究를 위한 各種 主題分野의 書目과 索引에 이어 珍貴한 引譜와 巨篇의 本目錄을 編纂 刊行하였고, 앞으로는 分類古書目錄, 古書年表文集內容索引, 叢書內容索引, 傳記資料索引, 民族學資料索引 등 龐大한 基本的 參考資料를 編纂하여 刊行할 豫定이라하며, 그 一部가 머지 않아 結實을 보게 될 다하니 생각할수록 호뭇하고 기쁘기 그지없다. 이것은 결코 1個人的의 느낌이 아니요 國內外的 學界가 한결같이 그 不朽의 業績을 기리 銘記하고 있을 것임에 새삼 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방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任用上의 問題

현재 任用上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시험과목에 관한 문제요 다른 하나는 응시 자격에 관한 문제다. 적어도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한 이상 또 전문성을 인정한 이상 시험 과목이 전문 과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 과목은 면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특별 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양 과목으로 되어 있어 실상 전공한 사람은 합격이 되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유자격 사서는 공개 채용 시험에의 응시율이 아주 저조하고 그 결과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합격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때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당사자도 업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고 기관으로서도 운영상 애로가 수반되게 된다. 그래서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그만두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하되 시험 과목 자체를 전문 과목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서직을 별정직화하여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고시로 대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語

이상으로 개략적이거나 사서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상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바라건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류 문명의 급진적인 발전은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을 진 도서관과 사서직 등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 국가 사회는 장족의 발전을 기할 것이다.

대전함을 느낀다. 이는 오로지 그 計劃을 손수 짜내고 그 實踐을 強力히 推進해 온 姜周鎭 館長 님을 爲頭로 이를 補弼해 온 關係官 들의 懇懇어린 賢勞의 結實임에 再三 敬謝한다.

끝으로 尹兄의 10餘年間에 걸친 晝夜不眠의 勞作에 대하여 淺學菲材한 筆者가 蛇足같은 愚見을 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韓國學 研究가 活氣를 띠기 시작하고 있는 무렵에 즈음하여, 稀罕한 우리의 文化遺産을 이토록 量의으로 集大成하여 研究의 方向을 提示해 주었고 아울러 메마른 學界에 勇氣와 希望을 불어넣어 준 點을 眞心으로 祝賀해 마지 않는 바이다. (千古山)